

# 학생 교과외 활동 지원 규정

제정 2013. 7. 1.      개정 2014. 3. 1.  
개정 2016. 12. 2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학생들의 교과외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재학생들이 인성 및 교양을 함양하고 또한 취업 및 진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졸업작품전” 라 함은 학생들이 각 전공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졸업직전학년도에 작품을 제작 또는 창안하여 전시함을 말한다.
- ② “학술제” 이라 함은 학생들이 각 전공 분야에서 습득한 지식을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봉사활동” 이라 함은 대학 대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동아리활동” 이라 함은 학생이 봉사 및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동아리 활동과 해당 전공 또는 학과에서 결성된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전공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전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과외 활동 분야)** 학생의 교과외 활동분야로는 다음과 같다.

1. 졸업 작품전 및 학술제
2. 취업교육 및 특강
3. 취업캠프
4. 봉사활동
5. 동아리 활동
6. 자아발견 캠프 참가 등 학생복지, 교수학습, 취업지원 등에 관련된 활동

**제6조(교과외 활동 지원)**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생활 안내 : 대학생활안내, 각종 특강
2. 졸업 작품전 및 학술제 경비 지원
3. 지역사회봉사 활동 지원, 헌혈 특별학점 인정
4. 동아리 활동 지원
5. 자체 성폭력 교육
6. 창업 및 취업교육, 진로강좌, 자격증 및 전문가 과정 운영

**제7조(교과외 활동 평가)**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재학생 실태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2. 졸업 작품전 및 학술제 평가

3. 진로강좌 및 각종 특강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4. 성교육특강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

**제8조(교과외 활동 지원 위원회)** ①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생 교과외 활동에 대한 전반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3.>

② 삭제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삭제 <2016.12.2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관한 전반사항
2.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관한 정책 결정
3. 학생의 교과외 활동에 대한 평가
4. 이외 학생의 교과외 활동 발굴 등에 관한 사항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